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95
----------	------

2017년 4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김태수 의원(찬성자 11명)
- 나. 제출일자 : 2017년 3월 23일
- 다. 회부일자 : 2017년 3월 27일
- 라. 상정결과 :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년 4월 20일,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태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여가시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미흡하고 여가정보,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 부족하여 자기계발이나 사회참여 등 생산적 여가 활동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서울사회의 일과여가에 대한 균형 요구, 다양한 일과 여가에 대한 균형 요구, 다양한 계층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식을 확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3)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4) 여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5)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6)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 (3)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정욱)

가. 제정안 개요

- 동 제정안은 시민이 자유로운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시민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음.

나. 조례 제정의 필요성 검토

- “여가(餘暇, leisure)”는 개인이 가정, 노동 및 기타 사회적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하에서 휴식, 기분전환, 자기계발, 사회적 참여를 이루기 위하여 활동하는 시간 또는 그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¹⁾ “레저”는 라틴어 licere에서 유래한 것으로 노동이나 직무로부터 일시적으로 면제되어 갖게 되는 자유시간을 말하는 영어 leisure를 그대로 옮겨 쓰는 외래어임.
- UN세계인권선언문에서는 모든 국가 정부는 기본적 권리로서 여가를 인식하고 그 권리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시간에 관한 협약에서 근로자를 위하여 적당한 여가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 「헌법」은 문화의 영역에 있어서 각 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간접적

1) 김광득(2017), 21세기 여가와 현대사회

으로 여가활동 및 여가진흥정책에 대한 기회균등을 기본원리로 표방하고 있으며, 「헌법」 제10조가 선언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여가기본권의 최고이념 및 존재근거가 됨.

- 여가활동의 주체는 개인이지만 여가권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므로 정부는 여가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여가정책의 목적은 국민복지를 실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가산업의 육성, 조세수입의 증가, 고용기회의 확대, 지역개발의 증진 등 경제적 목표를 구현해야 하는 외에도 산업, 노동, 환경,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관련이 있음.
- 여전히 과도한 노동과 학습시간으로 시민의 행복도가 낮고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평균 여가시간은 증가했으나 아직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고 소극적 여가행태를 보이는 현실에서²⁾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를 위한 방안으로 여가활성화가 필요하며,
- 2015년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여가스포츠 활성화 추진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나, 전반적인 여가활성화에 관한 계획은 없는 상황이므로, 일과 여가에 대한 균형, 여가활동 활성화 인식 확산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동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문화체육관광부,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다.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016.5.1. 시행됨.

라. 조례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 동 조례안은 시민의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13개조에 일과 여가의 조화,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여가 활성화 사업, 민간단체 등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12개의 조문은 모법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라 기술되고 있으므로 동 법의 내용과 중복 규정되는 한계가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체계나 내용 측면에서 크게 문제되는 점은 없다고 판단됨.

〈표 1〉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연번	조번호	조제목	주요 내용
1	제1조	목적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 조성,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
2	제2조	기본이념	일과 여가의 조화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 보장
3	제3조	정의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3조
4	제4조	시장의 책무	여가활성화 관련 정책 수립·시행
5	제5조	일과 여가의 조화	적절한 수준의 여가 보장, 직장에서의 휴가 사용 촉진
6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7	제7조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

8	제8조	조사 및 연구	시민여가활동실태조사(직장인의 여가를 위한 휴가사용실태조사를 포함)
9	제9조	여가 활성화 사업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9조~제10조, 제12조~제14조, 제17조
10	제10조	여가교육의 실시	여가교육을 학교 및 관련 시설 등에서 실시하거나 지원
11	제11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12	제12조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라. 주요 내용 검토

○ 목적 및 기본이념

안 제1조는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밝히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시민의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하고 여가환경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기본이념을 선언하고 있음.

○ 일과 여가의 조화

안 제5조는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과 금전 등의 자원을 확보하고 일정한 수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시행계획 및 여가활성화 사업

안 제7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열거하며 열거된 사업 이

외에도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여가교육

안 제10조는 여가의 개념을 수동적, 소극적 활동이라는 인식에서 적극적인 자기계발, 사회참여 등 생산적 여가활동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지정된 시설에서 여가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여가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방법, 관련 시설 등에 관해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동 시행령 제4조제2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시설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도 추가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표 2〉 관련 법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여가교육의 내용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가활동과 관련된 지식·기능·태도·가치관의 함양에 관한 사항
2. 여가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5.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7. 그 밖에 국민들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표 3〉 안 제10조 수정의견

제정안	수정의견
<p>제10조(여가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u>학교 및 관련 시설 등에서</u>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관련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p>	<p>제10조(여가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u>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u>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4. 그 밖에 시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p>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다.</p>

- 안 제11조(민간단체의 지원)는 시민의 여가활동 참여를 도모 경비지원 등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구체적인 경비의 지원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해서는 규정을 추가하고, “포상”의 경우 “표창”으로 수정이 필요함.

〈표 4〉 안 제11조 수정의견

제정안	수정의견
<p>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u>시장은</u> 시민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p>	<p>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u>시장은</u> 시민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p>

<p>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p><u>〈신 설〉</u></p>	<p>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창 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p><u>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 수여방법 및 절차 등은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포창 조례」에 따른다.</u></p>
--	--

- 안 제12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는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해 모범이 될 수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우수사례로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여가환경 변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함.

마. 종합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2015년 11월 19일 시행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과 동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는 여가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 스포츠팀을 신설하고 “여가스포츠 활성화 추진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나, 일 중심 사회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한 행복추구를 위한 삶으로 변화하는 추세에서 축제활성화, 관광진흥, 생활체육 활성화 등 대부분의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의 사업을 통해

시민 여가활동 기회 제공, 여가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나 시민의 행복지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여가 관련 실태조사, 여가 프로그램 개발, 여가교육 등 종합적인 여가정책에 따라 체계적으로 여가 계획을 수립·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 조례안의 내용 중 여가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방법, 관련 시설 등에 관해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도록 수정하고, 관련 시설의 경우 동 시행령 제4조제2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추가함.

민간단체의 지원 규정의 경우 구체적인 경비의 지원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해 추가하고, “포상”의 경우 “표창”으로 수정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여가교육의 실시 중 “학교 및 관련 시설 등”을 “다음 각 호의 시설”로 수정하고,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기 위해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신설함(안 제10조제1항)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련하여, “방법, 관련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다.”로 수정함(안 제10조제2항)

- 민간단체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포상”을 “표창”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1항)

여가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과 표창 수여방법 및 절차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르도록 항을 신설함(안 제11조제2항)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695
----------	---------

제안연월일 : 2017년 4월 20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

1. 수정이유

- 조례안의 내용 중 여가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방법, 관련 시설 등에 관해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도록 수정하고, 관련 시설의 경우 동 시행령 제4조제2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추가함.

민간단체의 지원 규정의 경우 구체적인 경비의 지원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해 추가하고, “포상”의 경우 “표창”으로 수정함.

2. 주요골자

- 여가교육의 실시 중 “학교 및 관련 시설 등”을 “다음 각 호의 시설”로 수정하고,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기 위해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신설함(안 제10조제1항)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련하여, “방법, 관련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다.”로 수정함(안 제10조제2항)

- 민간단체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포상”을 “표창”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1항)

여가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과 표창 수여방법 및 절차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르도록 함을 신설함(안 제11조제2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학교 및 관련 시설 등”을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4. 그 밖에 시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안 제10조제2항 중

“방법, 관련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다.”로 한다.

안 제11조 제목 외에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제2호 중 “포상”을 “표창”으로 한다.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 수여방법 및 절차 등은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0조(여가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u>학교 및 관련 시설 등에서</u>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u>방법, 관련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u></p>	<p>제10조(여가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u>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u>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u>」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2. 「<u>노인복지법</u>」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3. 「<u>장애인복지법</u>」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4. 그 밖에 시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p>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u>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다.</u></p>
<p>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u>시장은</u> 시민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u>포상</u> 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p><신 설></p>	<p>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u>시장은</u> 시민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u>포상</u> 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p>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 수여방법 및 절차 등은 각각 「<u>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와 「<u>서울특별시 포상 조례</u>」에 따른다.</p>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시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 ① 시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가 활성화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시민여가활동실태조사(직장인의 여가를 위한 휴가사용실태조사를 포함한다)를 비롯한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여가 활성화 사업)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시민 여가 참여를 위한 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여가시설의 개선 및 확충
4.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을 말한다)의 여가활동 지원
6.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의 육성
7. 그 밖에 시장이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여가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4. 그 밖에 시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시민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표창
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 수여방법 및 절차 등은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①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